
제53차 임시 이사회

2018. 5. 30.

서울디자인재단

제53차 임시이사회 개요

○ 일 시 : 2018년 5월 30일(수), 16:00

○ 장 소 : DDP살림터 2층 미디어룸

○ 참석대상

- 임 원 : 이사장 1명, 대표이사 1명, 비상임이사 10명, 비상임감사 2명
- 배 석 : 재단 경영단장·본부장, 서울시 디자인정책과, 공기업담당관

○ 보고안건 : 1건

- 신임 임원 임명 보고(서면보고)

○ 상정안건 : 4건

1.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
2. 정관 일부 개정안
3.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
4.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

○ 진행순서

순서	시간	내용	비고
1	16:00 ~17:30	이사회 개회선언 보고안건 보고 및 신임임원 인사말씀	이사장 진행
2		상정안건 보고 및 의결	이사장 진행
3		폐회	이사장 진행

서울디자인재단 이사회 구성 임원 명단(2018.5.30기준)

■ 임 원 : 14명 (이사 12, 감사 2)

직 위	성 명	생 년	입 기	현직 및 경력
이사장 (1)	 강 병 길	1954	'18.04.16~ '21.04.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숙명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· 前 서울생활용품플라자 총감독 · 前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예술감독
대표이사 (1)	 최 경 란	1962	'18.04.16 '21.04.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前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 · 前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(2015) · 前 서울디자인한미당 총감독
비상임 이사 (7)	 김 경 선	1971	'18.04.16 '21.04.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부교수 · 前 홍디자인 디자인실 이사 · 前 제일기획 프로모션사업팀
	 박 춘 무	1954	'17.05.12 ~ '20.05.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(주)데무 디자인실 감사
	 이 충 기	1961	'17.05.12 ~ '20.05.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· 前 한메건축사사무소 대표
	 좌 세 준	1965	'17.05.12 ~ '20.05.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· 前 한양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
	 김 승 언	1979	'17.05.12 ~ '20.05.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네이버 디자인센터장 · 前 프라첵(주)디자이너 · 前 NHN엔터테인먼트 이사
	 방 은 진	1965	'17.05.12 ~ '20.05.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모베타필름 대표 · 前 서울예술대 영화과 겸임교수 · 前 성신여대 영상연기 교수
	 한 문 철	1958	'17.05.12 ~ '20.05.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 · 前 서울시 문화디자인본부장(2급) · 前 시의회사무처장(1급)
비상임 이사 (근로자이사 1)	 정 승 언	1980	'17.05.12 ~ '20.05.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서울디자인재단 선임 · 前 (주)간국휴먼 직원 · 前 (주)가사애나 직원
비상임 이사 (당연직 2)	 서 정 협	1965	'17.07.01 ~ 재입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서울시 문화본부장 · 前 시민소통기획관
	 박 대 우	1966	'18.01.01 ~ 재입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서울시 재정기획관 · 前 경제기획관 · 前 정책기획관
비상임 감사 (당연직 1)	 김 선 수	1965	'18.01.01 ~ 재입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 · 前 신성장산업과장
비상임 감사 (1)	 신 종 범	1971	'18.04.16~ '21.04.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법률사무소 누리 변호사 · 現 기천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· 前 법무법인 더평 변호사

목 차

제158호	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	8
제159호	정관 일부 개정안	16
제160호	인사규정 일부 개정안	24
제161호	복무규정 일부 개정안	27
보고안건	신임 임원 임명 보고	32

○ 안건 주요 내용

안 건	주 요 내 용	근거
1.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패션위크 타이틀스폰서 유치(아모레퍼시픽 헤라)에 따른 세입(9억) 증가에 따른 추가 편성(64억 + 9억 ⇒ 73억) 	정관 제25조 (의결사항)
2. 정관 일부 개정안	<p>[사업범위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4조)사업의 범위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내용 추가 <p>[임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10조)임원 연임 시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• (제13조)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시 2인이상->2배수 이상 추천으로 문구 변경 • (제14조)감사 유고시 직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감사부서 직무대행 가능 명시 • (제15조)임원의 결격사유 삭제 및 추가 <p>[조직 및 정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23조)재단 정원 및 기구표 명시<별표1, 2> <p>[이사회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26조)이사장 업무수행비 지급 내용 명시 <p>[예산/결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36조)예산 변경 건 15일 이내 시의회에 예산서 제출 • (제37조)결산보고서 시의회에 제출 	<p>서울시 디자인 정책 4개년 계획 (행정1부시장 방침 -280, 2017.9.28.)</p> <p>서울시 조치사항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 (서울시 공기업담당관, 2018.3.2)</p>
3.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18조)승진시기 매년 3월로 정함(내규 내용 규정에 반영) • (제30조)근무평정 추진 절차 명시 • (제44조)인사위원회 위원장 경영본부장으로 변경, 모든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운영(서울시 주무부서장 포함할 수 있음) <p>• (제24조)휴직기간 변경(가족돌봄 휴직 90일 ⇒ 1년)</p>	<p>혁신TF결과 반영</p> <p>재단 단체협약 43조</p>

4.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22조)반일연차와 유연근무 동시 사용 시 연차시간 4시간 근무기준으로 운영 	재단 복무 관리 계획, 복무규정 13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23조)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%이상인 경우, 2년차 쓸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 발생,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기간과 함께 인정함 	근로기준법 60조 개정 (시행일 2018.5.29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23조)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방법 개정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25조)생리 및 산전후 휴가의 용어 변경 (출산휴가 ⇒ 출산전후휴가) 	근로기준법 74조에 의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26조)육아휴직 연기 사유 및 변경신청 가능 신설 	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28조)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개정 (1년 ⇒ 2년) 	인사규정24조 (휴직기간), 재단 단체협약 68조

의안번호	제158호
의결연월일	2018. 05. 30

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

제안자	기획경영팀
제안년월일	2018. 05. 30

1. 의결주문

-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.

2. 제안이유

-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25조에 의거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(안)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서울패션위크 협찬금 수입을 세입·세출 예산에 추가 편성
 - 추가편성 근거 : 타이틀 스폰서 '아모레 퍼시픽 헤라' 유치(900백만원)
 - 세입·세출조정(안) : 53,551백만원 → 54,451백만원(900백만원 증액)

구 분		예 산	비 고
세입 조정	합 계	+900백만원	총 세입 535억 → 544억
	서울패션위크 협찬수입 증가 공식 타이틀스폰서(협찬금)	+900백만원 +900백만원	· 업체 타이틀 스폰서(900백만원)
세출 조정	합 계	+900백만원	총 세출 535억 → 544억
	서울패션위크 개최 바이어, 프레스초청 및 시민초청 행사운영비용	+900백만원 +900백만원	· 서울컬렉션 진행비용 추가(300백만원) · 신진디자이너 지원(300백만원) · 바이어 초청 추가(200백만원) · 기타 부대행사(100백만원)

4. 참고사항

- 제안근거 :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 25조(의결사항),
2018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
- 절 차 : 이사회 의결 후 서울시장 승인
- 기 타 : 개정안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

[별첨1] 2018년 서울디자인재단 예산변경 내역

2018년 사업예산 변경내역(종합)

○ 2018년 세입 변경 내역

단위 : 천원

구 분	2018년 변경	2018년 당초	증감액
세입총계	54,451,044	53,551,044	900,000
영업수익	18,154,125	17,254,125	900,000
자체수입수익	18,154,125	17,254,125	900,000
DDP 운영수입	15,845,965	15,845,965	-
디자인문화상품판매수입	74,160	74,160	-
서울패션위크 운영수입	1,924,000	1,024,000	900,000
트레이드쇼 운영수입	260,000	260,000	-
디자인지원센터 운영수입	50,000	50,000	-
영업외수익	30,274,600	30,274,600	-
출연금 수익	30,186,000	30,186,000	-
디자인사업 출연금	7,771,800	7,771,800	-
패션봉제 출연금	14,045,000	14,045,000	-
일반관리비 출연금	8,369,200	8,369,200	-
기타수익	88,600	88,600	-
이자수익	88,600	88,600	-
기타수익	-	-	-
전기이월금	6,022,319	6,022,319	-
DDP 이월금	1,373,686	1,373,686	-
패션봉제 이월금	1,195,638	1,195,638	-
재단운영 이월금	3,452,994	3,452,994	-

○ 2018년 세출 변경 내역

단위 : 천원

구분	2018년 변경	2018년 기존	증감액
세출총계	54,451,044	53,551,044	900,000
재단운영	18,586,760	18,586,760	-
디자인생태계조성	6,521,960	6,521,960	-
디자인전시참가지원	200,000	200,000	-
디자인창조기업육성	420,000	420,000	-
서울디자인워크 개최	1,872,800	1,872,800	-
서울디자인컨설팅운영	250,000	250,000	-
디자인공예문화산업활성화	2,032,160	2,032,160	-
도심공공안전안심디자인	250,000	250,000	-
동대문DDP디자인마켓	800,000	800,000	-
기업디자인역량강화지원사업	200,000	200,000	-
신진디자이너육성사업	497,000	497,000	-
시민디자인사업	3,354,000	3,354,000	-
디자인교류	440,000	440,000	-
디자인홍보마케팅사업	410,000	410,000	-
시민디자인연구	904,000	904,000	-
디자인교육프로그램	500,000	500,000	-
유니버설디자인센터운영	800,000	800,000	-
디자인커뮤니티협력강화	300,000	300,000	-
일반관리비	8,710,800	8,710,800	-
인건비	5,437,188	5,437,188	-
운영경비	2,640,103	2,640,103	-
성과급	633,509	633,509	-
패션봉제사업	16,641,000	15,741,000	900,000
패션기반산업지원및지원시설운영	15,641,000	14,741,000	900,000
패션지원센터운영	3,474,000	3,474,000	-
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운영	475,500	475,500	-
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개최	150,000	150,000	-
봉제교육운영	300,000	300,000	-
동대문패션상권활성화지원	2,021,500	2,021,500	-
서울패션워크 개최	7,290,000	6,390,000	900,000
트레이드쇼개최	1,080,000	1,080,000	-
지속가능패션봉제허브운영	850,000	850,000	-
패션산업글로벌마케팅지원	1,000,000	1,000,000	-
글로벌패션브랜드육성지원	700,000	700,000	-
해외전시회참가지원	300,000	300,000	-
DDP	17,055,965	17,055,965	-
기반운영사업	17,055,965	17,055,965	-
시설안전안심운영관리	12,544,000	12,544,000	-
DDP정보화사업	960,000	960,000	-
DDP일반관리비	3,551,965	3,551,965	-
예비비	2,167,319	2,167,319	-
DDP예비비	163,687	163,687	-
패션봉제예비비	783,638	783,638	-
재단운영예비비	1,219,994	1,219,994	-

[별첨2] 변경 사업계획서

변경	서울패션위크
-----------	---------------

1	예산(안) 설명
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□ 예산(안) 총괄 (단위 : 천원)

구	분	2018예산(기존) (A)	2018예산(변경) (B)	예산구분	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출연금	자체수입		
계		6,390,000	7,290,000	5,366,000	1,924,000	900,000	14.39%
준계패션위크 개최		2,510,400	2,960,400	1,998,400	962,000	450,000	19.53%
추계패션위크 개최		2,510,400	2,960,400	1,998,400	962,000	450,000	17.47%
패션위크 기획 및 운영		300,000	300,000	300,000	-	-	0.00%
패션 위크 대 관 료		1,069,200	1,069,200	1,069,200	-	-	-

※ 아모레퍼시픽 ‘헤라’ 의 서울패션위크 타이틀 스폰서십에 따른 900,000천원 추가 수입 확보

□ 예산(안)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	2018년 예산안				
	구분	기존	변경	증감	비고
준계패션위크	총감독 용역비	50,000	50,000	-	
	서울컬렉션 (40회) · 무대 및 시스템(조명, 음향 등) 설치 · 운영비품(접이식의자, 차단봉 등)렌탈 · 인력운영(사무국, 입출입관리, 보안, 미화 등) · 사이니지(포스터, 포토월, 배너 등) 제작	1,000,000	1,200,000	200,000	-시스템 설치/운영 추가인력 투입
	신진 디자이너 쇼 지원 (20회) · 무대 및 시스템(조명, 음향 등) 설치 · 운영비품(접이식의자, 차단봉 등)렌탈	200,000	350,000	150,000	-미래로 하부 쇼장 설치
	교류 패션쇼 개최 (신규) (1회) · 모델 등 패션쇼 연출 지원 · 디자이너 항공 및 숙박 지원	300,000	300,000	-	
	패션문화이벤트 등 특별 프로그램 · 오프닝, 네트워킹, 피날레 등 공식 세레모니 · 멘토링 세미나 · 패션 필름 페스티벌 등 시민참여이벤트	130,000	130,000	-	
	해외 프레스 및 바이어 초청 · 프레스 바이어 유치 및 항공 숙박 지원 · 인력운영(컨시어지 전담인력, 통역 등)	500,000	600,000	100,000	-멘토 /바이어 10명 추가 (40명→50명)
	국내외 홍보마케팅 · 기자간담회 운영 · 미디어(일간지, 패션전문지, 월간지 등) 홍보	195,400	195,400	-	
	서울패션위크 아카이빙 구축 · 기록용 영상 및 사진 촬영 · 홈페이지 운영 · 서울패션위크 데일리뉴스페이퍼 제작 및 발간	85,000	85,000	-	

	기타 운영비 · 구조안전진단, 상해보험, 원상복구비용 등 ·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작업 · 기타 진행비 등	50,000	50,000	-	
	소 계	2,510,400	2,960,400	450,000	
추계패션위크	총감독 용역비	50,000	50,000	-	
	서울컬렉션 (40회) · 무대 및 시스템(조명, 음향 등) 설치 · 운영비품(접이식의자, 차단봉 등)렌탈 · 인력운영(사무국, 입출입관리, 보안, 미화 등) · 사이니지(포스터, 포토월, 배너 등) 제작	1,000,000	1,115,000	115,000	-시스템 설치/운영 추가인력 투입 -알림1,2관 외 추가 세팅
	신진 디자이너 쇼 지원 (20회) · 무대 및 시스템(조명, 음향 등) 설치 · 운영비품(접이식의자, 차단봉 등)렌탈	200,000	350,000	150,000	-미래로 하부 쇼장 설치
	교류 패션쇼 개최 (신규) (1회) · 모델 등 패션쇼 연출 지원 · 항공 및 숙박 지원	300,000	300,000	-	
	패션문화이벤트 등 특별 프로그램 · 오프닝, 네트워킹, 피날레 등 공식 세레머니 · 멘토링 세미나 · 패션 필름 페스티벌 등 시민참여이벤트 · 명예디자이너전시(준계 1회)	130,000	200,000	70,000	-명예디자이너 전시 개최지원 -시민참여 이벤트 추가
	해외 프레스 및 바이어 초청 · 프레스 바이어 유치 및 항공 숙박 지원 · 인력운영(컨시어지 전담인력, 통역 등)	500,000	600,000	100,000	-멘토 /바이어 10명 추가 (40명→50명)
	국내외 홍보마케팅 · 기자간담회 운영 · 미디어(일간지, 패션전문지, 월간지 등) 홍보	195,400	195,400	-	
	서울패션위크 아카이빙 구축 · 기록용 영상 및 사진 촬영 · 홈페이지 운영 · 서울패션위크 데일리뉴스페이퍼 제작 및 발간	85,000	100,000	15,000	-영상 추가 제작 등
	기타 운영비 · 구조안전진단, 상해보험, 원상복구비용 등 ·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작업 · 기타 진행비 등	50,000	50,000	-	
	소계	2,510,400	2,960,400	450,000	
패션위크 기획 및 운영	사무국 운영 · 대행사 및 춘추계 서울패션위크 심사 등	300,000	300,000	-	
패션위크대관 료	DDP 대관료(2회)	1,069,200	1,069,200	-	
합 계		6,390,000	7,290,000	900,000	

□ 사업목적

- 패션산업의 기반인 국내 브랜드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
- 세계 5대 패션도시 진입을 위한 글로벌 패션비즈니스 인프라 조성
- 세계패션 중심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 제고

□ 사업개요

- 일시/장소 : [춘계] 2018.3.19.~24 [추계] 2018.10.15~20/ DDP 및 서울 전역
- 행사내용
 - 패션쇼 및 관련 부대행사
 - 서울컬렉션 : 국내외 프레스 대상 독립 패션 브랜드 쇼 개최(시즌별 40회 내외)
 - 해외 교류 패션쇼 개최 (신규) : 런던패션위크 조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디자이너 쇼 진행
 - 제너레이션넥스트 : 국내외 신진 디자이너의 트레이드 쇼 참가 및 패션쇼 지원(시즌별 20회)
 - 어워드 : 원로, 중견, 신진 디자이너 중 각 1인을 선정하여 디자이너에게 수상
 - 공식세레모니(오프닝, 네트워킹, 피날레 등) : 참가디자이너와 해외 바이어·프레스와의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파티
 - 패션 관련 시민참여 문화행사
 - 패션전시 : 원로 디자이너 수상자 패션 아카이빙 전시 (년 1회)
 - 멘토링 세미나 : 해외 패션 전문가들로 구성 된 멘토링 세미나 진행
 - 아카이빙 : 국내 디자이너 디렉토리 및 히스토리 구축 ※ 지속적인 축적을 통해 패션 박물관의 전신 구축
 - 기타 부대행사 : 시민 참여 및 소통을 위한 다양한 패션문화 이벤트

□ 중점추진사항

① 역량있는 디자이너 육성 및 지원 확대

- 디자이너 대상 퍼스널 멘토링 프로그램의 내실 강화
 - 멘토링 세미나 세션 다양하게 구성하여 프로그램 내실 강화
 - 멘토와 디자이너 간 직접 소통 방편 마련, 디자이너별 맞춤 멘토링 기회 제공
- 패션 기업, 유통, 미디어와 디자이너 지원 펀드 조성, 신진 디자이너 후원
 - 디자이너 후원 방안 다각화

② 행사 규모 확대 및 전문성 강화, 아시아 패션마켓 허브로 자리매김

-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서울패션위크 및 트레이드쇼 규모 확대
 -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의 서울패션위크 및 트레이드쇼 참가 유치 강화
 - 알림관 외 컬렉션 개최 장소의 옵션 추가 제공, 컬렉션의 다변화 모색
- 런던패션협회(British Fashion Council)과 협력, 교류 패션쇼 개최

③ 패션문화의 도시 서울의 차별점 강화로 글로벌 패션위크로 도약

- 서울 전역에서 워크 기간 ‘패션’ 을 모티브로 다양한 패션 축제 추진
- 다양한 협업 방안을 통한 기업들의 글로벌 홍보 플랫폼 역할 강화
 - 신제품 프로모션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타 산업과의 협업 연계 방안 마련

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 (천원)	추진세부내용
계		7,290,000	
세부실행계획 수립	2017. 12.	1,069,200	2018년 종합계획(안)수립/ DDP 대관료 집행
모집공고	2018. 1.	-	운영대행사 모집 공고/ 디자이너 모집
선정심사	2018. 1~2.	150,000	운영 대행사 선정 및 계약 디자이너 선정 심사, 발표
18춘계 서울패션위크 개최	2018. 3	895,400	2018FW 서울패션위크 개최
18춘계 리뷰	2018. 4.	-	서울패션위크 리뷰 및 개선점 도출
18춘계 사업비 정산	2018. 5.	2,215,000	18춘계 사업비 정산
모집공고	2018. 7.	-	디자이너 모집
선정심사	2018. 8.	150,000	디자이너 선정 심사, 발표
18추계 서울패션위크 개최	2018. 10.	865,400	2019SS 서울패션위크 개최
18추계 리뷰	2018. 11.	-	서울패션위크 리뷰 및 개선점 도출
18추계 사업비 정산	2018. 12.	2,215,000	18추계 사업비 정산
19년 종합계획수립	2018. 12.	-	19년 종합계획(안)수립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패션위크 수주실적 \$4,730천 (연간) · 국내외 바이어 494명 참석 (해외 316명 (초청 139명), 국내 178명) · 국내외 프레스 1429명 참석 (해외 270명 (초청 38명) 국내 1159명)
2016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패션위크 수주실적 \$7,118천 (연간) · 국내외 바이어 635명 참석 (해외 427명(초청 299명), 국내 208명) · 국내외 프레스 1565명 참석 (해외 125명(초청 37명), 국내 1440명)
2017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패션위크 수주실적 \$3,880천 (상반기) · 국내외 바이어 676명 참석 (초청 312명) · 국내외 프레스 1601명 참석 (해외 179명 (초청 40명), 국내 1180명)

향후 기대효과

- K-패션 브랜드의 해외진출 교두보 및 글로벌 홍보 플랫폼 역할
- 서울패션위크를 통한 패션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 기여

의안번호	제 159 호
의결연월일	2018. 05. 30

정관 일부 개정안

제 안 자	기획경영팀
제안년월일	2018. 05. 30

1. 의결주문

- 「정관」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『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(행정1부시장방침-280, 2017.9.28.)』에 따른, ‘유니버설디자인 연구·사업 및 운영’ 내용을 추가하여 생활밀착 디자인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(제4조 사업의 범위)
- 행정안전부 지방공사(공단)정관(안) 및 투자기관 정관(안)에 따른 『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(공기업담당관-2493, 2018.3.2)』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정관 표준(안) 내용을 적용하여 개정 (제10조 임원의 임기, 제13조 임원후보의 추천절차, 제14조 임원의 직무,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, 제23조 조직 및 정원, 제26조 이사회회의 소집, 제36조 사업계획과 예산, 제37조 결산)

3. 주요골자

- (1) 제4조(사업의 범위) :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내용 추가
- (2) 제10조(임원의 임기) : 임원 연임시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내용 추가
- (3) 제13조(임원후보의 추천절차) :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 추천 시 결원 직위에 대해 2인 이상 추천 ⇨ 2배수 이상 추천으로 변경
- (4) 제14조(임원의 직무) : 감사는 유고시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부서 직무 대행 가능
- (5) 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
 -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삭제
 - 미성년자 ·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**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**으로 용어 변경
 - 실형 선고 후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 ⇨ **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**으로 변경

- 형법에 규정된 **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** 내용 추가

(6) 제23조(조직 및 정원) : 재단 조직 및 정원 명시<별표 1, 2추가>

(7) 제26조(이사회의 소집) : 이사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월정액 지급 가능

(8)~(9) 제36조(사업계획과 예산), 37조(결산) :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, 회계연도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하는 내용 추가

4. 참고 사항

○ 절 차 : 이사회 의결 후 시장 승인

○ 기 타 : 개정안은 시장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

「정관」 개정

「정관」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4조(사업의 범위), 제10조(임원의 임기), 제13조(임원후보의 추천절차), 제14조(임원의 직무), 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, 제23조(조직 및 정원), 제26조(이사회회의 소집), 제36조(사업계획과 예산), 제37조(결산)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사업의 범위)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운영 2.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3. 디자인정책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조사 연구 및 전시·보급 4. 패션·봉제산업 지원사업 5.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6. 디자인지원산업과 관련된 교육 및 학원운영 7.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 운영 8.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9.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'시장'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 10. 기타 출판업, 주차장운영업, 디자인상품 도·소매업 및 수출, 그 밖에 디자인 및 도시건축 진흥,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(공예문화산업 지원사업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)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	<p>1~8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9. 유니버설디자인 연구·사업 및 운영<추가> 10.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'시장'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 11. 기타 출판업, 주차장운영업, 디자인상품 도·소매업 및 수출, 그 밖에 디자인 및 도시건축 진흥,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(공예문화산업 지원사업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)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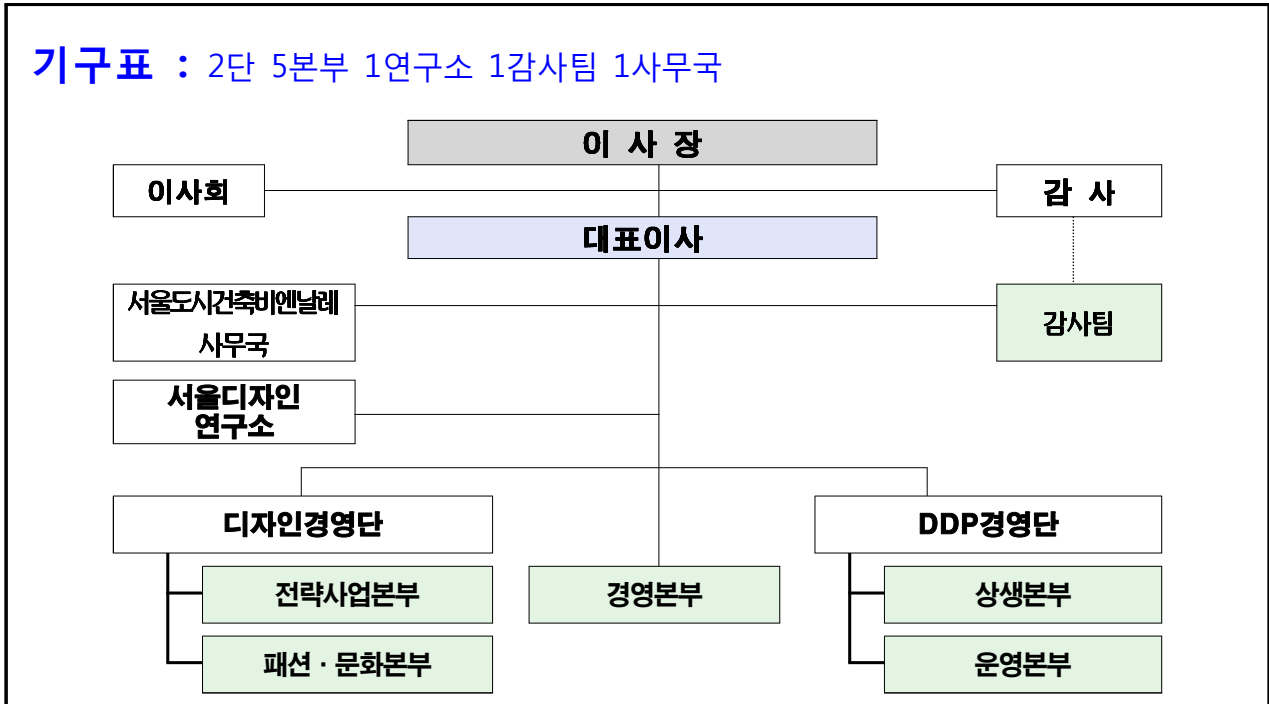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(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)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 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 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완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</p> <p>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</p>	<p>제10조(임원의 임기)</p> <p>① 이사(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)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<2011.11.12. 개정>, <2017.01.02 개정></p> <p>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<추가></p> <p>기존 ②번을 ③번으로 조정 기존 ③번을 ④번으로 조정</p>
<p>제13조(임원후보의 추천절차)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11.12.></p>	<p>제13조(임원후보의 추천절차)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<u>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</p>	<p>제14조(임원의 직무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<u>직무를 감사하며,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 <추가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한다.<개정 2012.03.27.></p> <p>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</p> <p>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<u>감사한다</u>.</p> <p>⑤ 상근직 임원은 대표이사에 한하며, 상근임원은 시장의 승인이 없는 한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</p>	
<p>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. 미성년자 ·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<p>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</p> <p>④ 시장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및 정관을 위반한 때 2.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때 	<p>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<삭제> 1항 번호 삭제에 따라 기존 2~5항 번호 조정 1. <u>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u>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<u>사람</u> 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<u>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u> 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<u>사람</u> 5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<u>사람</u> 6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<u>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추가></u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3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때	
제23조(조직 및 정원)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	제23조(조직 및 정원)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1,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, <추가>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
제26조(이사회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.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	제26조(이사회회의 소집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. <추가>
제36조(사업계획과 예산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	제36조(사업계획과 예산) ①항 번호 신설(내용 현행과 같음)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추가>
제37조(결산)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② 재단은 결산완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 ③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,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.	제37조(결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추가>

현 행	개 정 안
(별표 없음)	별표1. 조직<추가> 별표2. 정원<추가>

< 별표 1 >



< 별표 2 >

정 원 표

정원표														
상임 이사	일반직							전문직						총계
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소계	가급	나급	다급	라급	마급	소계	
1	4	11	14	25	33	36	123	1	4	8	12	3	28	152

의안번호	제 160 호
의결연월일	2018. 05. 30

인사규정 일부 개정

제 안 자	경영지원팀
제안년월일	2018. 05. 30

1. 의결주문

- 「인사규정」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 '재단운영 혁신방향' 보고 시 시장 요청사항(2018.1.24.) 후속조치 및 재단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인사제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인사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원칙 준수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(제18조 승진의 원칙, 제30조 근무평정, 제44조 인사위원회 운영)
- 재단 단체협약 43조에 따라 휴직기간 기간을 변경함 (제24조 휴직기간)

3. 주요골자

- **제18조(승진의 원칙) 3항** : 인사규정 시행내규상의 승진의 시기를 인사규정으로 이동하여 "승진의 시기는 매년 3월로 정한다."로 개정함.
단, 2018년은 예외로 함
- **제24조(휴직기간) 6호** : "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(가족돌봄휴직)은 연간 최장 1년"으로 변경 개정함.
- **제30조(근무평정) 2항** : 근무평정 시 "평정실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공고를 하며, 평가자 교육 및 피평가자의 면담을 진행하고, 평정이 완료되면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."로 개정함.
- **제44조(인사위원회 운영) 1항** : "위원회는 경영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모든 인사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한다.", "외부위원에 서울시 주무부서의 장을 포함 할 수 있다"로 개정함.

4. 참고 사항

- 절 차 : 이사회 승인
- 기 타 : 개정안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

「인사규정」 일부 개정

「인사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8조(승진의 원칙), 제24조(휴직기간), 제30조(근무평정), 제44조(인사위원회 운영)를 아래같이 개정함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승진의 원칙)</p> <p>③ 승진의 시기는 시행내규로 정한다.</p>	<p>제18조(승진의 원칙)</p> <p>③ 승진의 시기는 <u>매년 3월로</u> 정한다. 부칙 18조(승진의 원칙) 3항은 2018년을 예외로 한다.</p>
<p>제24조(휴직기간)</p> <p>6.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연간 <u>최장 90일</u>로 하며,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.</p>	<p>제24조(휴직기간)</p> <p>6.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연간 <u>최장 1년</u>으로 하며,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<u>30일 이상</u>으로 한다.</p>
<p>제30조(근무평정)</p> <p>② 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</p>	<p>제30조(근무평정)</p> <p>② 근무평정은 다음의 각 호의 평정절차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평정실시 <u>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</u> 이전에 공고를 한다. 2. 근무평정 공고 후 <u>7일 이내</u>에 평가자 교육을 실시한다. 3. 평가자는 평가기간 내 피평가자 면담을 실시한다. 4. 인사부서의 장은 근무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직원에게 평가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. <p>③ 기타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 <추가></p>
<p>제44조(인사위원회 운영)</p> <p>① 위원회는 디자인경영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세부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</p>	<p>제44조(인사위원회 운영)</p> <p>① 위원회는 <u>경영본부장</u>을 위원장으로 하고,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<u>모든 인사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</u>으로 하고 <u>외부위원에 서울시 주무부서의 장을 포함할 수 있다.</u> 세부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</p>

의안번호	제 161 호
의결연월일	2018. 05. 30

복무규정 일부 개정

제 안 자	경영지원팀
제안년월일	2018. 05. 30

1. 의결주문

- 「복무규정」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2. 제안이유

- 재단 「복무규정 제13조(근무시간)」 및 「재단 복무관리계획(2017)」에 따른 반일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현실화 하고자 함 (제22조 휴가의 종류)
- 「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유급휴가)」의 개정에 따라(시행일 2018.05.29.)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보장 확대 등 개정 (제23조 연차휴가)
- 「근로기준법 제74조(임산부의 보호)」에 의거 산전후 휴가에 대한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함 (제25조 생리 및 산전후 휴가)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」에 의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규정 신설 (제26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)
- 「인사규정 제24조(휴직기간)」, 「재단 단체협약 제68조(육아휴직)」에 의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정 (제28조 모성보호)

3. 주요골자

- **제22조(휴가의 종류)** : 반일연차휴가는 14:00를 기준으로 하나,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때(유연근무)에는 4시간 근무기준으로 계산 함
- **제23조(연차휴가)** :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% 이상인 경우,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발생하며, 육아휴직(최초1년)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정함
- **제25조(생리 및 산전후 휴가)** :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해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출산전후 휴가를 허가하도록 명칭을 명확히 함
- **제26조 2(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)** :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 및 휴직종료예정일(1회)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
- **제28조(모성보호)** :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총 기간은 2년이 되도록 개정함

4. 참고 사항

- 절 차 : 이사회 승인
- 기 타 : 개정안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

「복무규정」일부 개정

「복무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2조(휴가의 종류), 제23조(연차휴가), 제25조(생리 및 산전후 휴가), 제26조 2(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), 제28조(모성보호)를 아래같이 개정함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휴가의 종류)</p> <p>③ 반일연차휴가는 14:00시를 기준으로 오전. 오후를 구분하며, 반일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.</p>	<p>제22조(휴가의 종류)</p> <p>③ 반일연차휴가는 14:00시를 기준으로 오전. 오후를 구분하며, 반일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. 단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때에 반일연차휴가는 4시간 근무기준으로 계산한다. <추가></p>
<p>제23조(연차휴가)</p> <p>② 계속근무연수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</p>	<p>제23조(연차휴가)</p> <p>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</p>
<p>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,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.</p>	<p>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,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. 단,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추가></p>
<p>⑧ 제1항의 연차휴가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까지로 하고, 제1항 및 제4항의 연차휴가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.</p>	<p>⑧ 제1항의 연차휴가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까지로 하고, 제1항 및 제4항의 연차휴가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.</p>
<p>⑨ 이 규정이 정한 휴일 및 휴가기간, 업무상의 부상, 질병 또는 산전 후 휴가기간은 제 8항의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출근일수 계산시 병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월간 누계 2일, 연간 누계 7일을 초과하</p>	<p>⑨ 이 규정이 정한 휴일 및 휴가기간, 업무상의 부상, 질병 또는 산전 후 휴가기간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. 다</p>





현 행	개 정 안
<p>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.</p>	<p>만, 출근일수 계산시 병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월간 누계 2일, 연간 누계 7일을 초과하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.</p>
<p>제25조(생리 및 산전후 휴가) ① 임신중의 직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(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(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</p>	<p>제25조(생리 및 산전후 휴가) ① 임신중의 직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(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(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</p>
<p><없음></p>	<p>제26조의 2(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)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, 부상, 질병 또는 신체적·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<p>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(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)까지 인사담당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
<p>제28조(모성보호) ⑧ 근로자는 제26조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.</p>	<p>제28조(모성보호) ⑧ 근로자는 제26조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.</p>

서울디자인재단 임원 선임 보고

서울디자인재단 임원 선임 완료 보고

□ 신입 임원 명단(4명)

○ 입 기 : 3년

직 위	성 명	생 년	입 기	현직 및 경력
이 사 장	 강 병 길	1954	'18.04.16~ '21.04.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숙명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· 前 서울생활용품플라자 총감독 · 前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예술감독
대표이사	 최 경 란	1962	'18.04.16 '21.04.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前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 · 前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(2015) · 前 서울디자인한마당 총감독
비상입 이 사	 김 경 선	1971	'18.04.16 '21.04.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부교수 · 前 홍디자인 디자인실 이사 · 前 제일기획 프로모션사업팀
비상입 감 사	 신 종 범	1971	'18.04.16~ '21.04.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現 법률사무소 누림 변호사 · 現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· 前 법무법인 더웬 변호사

□ 추진경위

- 선임절차 : 임원추천위 회의 ⇒ 모집공고 ⇒ 임원후보자 추천 ⇒ 임명(시장)
- 임추위 구성 : 7명(시장 추천 2, 시의회 추천 3, 이사회 추천 2)
- 추진일자
 - '17. 11. 3 : 디자인재단 50차 이사회 임원추천위원 2명 추천
 - '17. 12. 26 : 시의회 임원추천위원 3명 추천
 - '18. 2. 6 : 시장 임원추천위원 2명 추천
 - '18. 2. 21 : 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
 - '18.2.22 ~ '18.3.9 : 모집공고
 - '18.3.12 : 제 2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
 - '18.3.16 : 제 3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
 - '18.3.17 : 후보 대상자 2배수 추천(재단 ⇒ 서울시)
 - '18.4.16 : 서울시장 최종 임명